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2034810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항소인	[redacted]도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가합52531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26.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7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나. (1)항의 "구 지방세법(2009. 1. 1. 법률 제9302호) … 1,000분의 20)"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호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1조 제1항 제3호 (2)는 농지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제1쟁점은, 수익자인 [redacted]저축은행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등록세율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를 적용할지, 아니면 통상의 매매 등 부동산 소유권의 유상취득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지 여부이다.

(2) 제2쟁점은, 수익자인 [redacted]저축은행이 등록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고한 결과 수익자의 등록세 신고행위에 등록세율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가 과다납부한 것으로 되는 경우, 그 신고행위에 있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한 과납 등록세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제1쟁점(등록세율의 근거법규)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문언 자체에서 감경된 등록세율의 적용대상을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로 이전하는 경우 그 소유권취득의 등기'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수익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생보신탁으로부터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소유권등기를 마친 이상 그 원인이 신탁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등록세율은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그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redacted]저축은행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가 아닌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에 따른 등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법률을 잘못 해석·적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제2쟁점(등록세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가)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redacted]저축은행이 한 등록세 등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redacted]저축은행의 등록세 등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먼저 등록세율에 관하여 수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신탁재산 소유권이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가 신탁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탁관계가 종료되면서 신탁재산이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통상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유상취득의 경우보다 세율을 감경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redacted]저축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농지 이외 부동산 소유권의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redacted]저축은행 외의 다수의 금융기관도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지방세법상 감면된 등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 이외 부동산 소유권의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한 바 있다. 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도 위와 같은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 신탁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 등 계약을 통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등 참조할 만한 선례가 없었고 각급 법원의 재판례도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같이 결론을 달리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솔로몬저축은행이 등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수익자가 신탁과 무관하게 공매절차에서 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등록세율에 관하여 농지 이외 부동산 소유권의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었다.

② 그 밖에 [redacted]저축은행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과세관청인 피고가 어떠한 잘못된 유도나 종용 또는 권유 행위를 하는 등 책임이 있다거나 그에 따라 납세자인 [redacted]저축은행이 부득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redacted]저축은행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때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2014. 1. 2.에야 비로소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게 과다납부된 등록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3) 소결

따라서 [redacted]저축은행의 등록세 등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과다납부된 등록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한창

판사 왕정옥

판사 박재영